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31157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31157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6. 9 선고 2020가단10077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석

변론 종결 2020. 11. 18

판결선 고 2020. 12. 16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6. 9. 선고 2020가단1007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별지2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및 선정자에게 별지 2목록 제3항기재 건물을 철거하고,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 3지분, 선정자 는 1/ 3지분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0/210지분,선정자는 5/210지분을 각 보유한 공유자이다.

나. 망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 2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망 E가 2016. 11. 23.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 E를 공동상속(피고 B 3/7, 피고 C, D 각 2/7지분) 하고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6 느단 609호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7 . 1. 4.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및 선정자에게,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철거하고,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이 사건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제288조의적용을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권준범 판사 예혁준 판사 김대규

별지

1)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부담할 것도 구하고 있으나(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참조),피고들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이상 그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따로 청구취지로 기재하지는 않는다.